2013도6835 특가법위반(배임) (전직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기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공보관(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일영)은 2013. 9. 27. 『전 경호처장인 피고인 A, 경호처 직원인 피고인 B가 000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부지와 그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매매계약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000 대통령의 아들 C와 국가에 분담시킴에 있어,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함(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1. 사안의 쟁점

- 경호처장이던 피고인 A, 매입 실무담당자인 경호처 직원 피고인 B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000 대통령의 아들 C와 국가 명의로 일괄매입하며 그 매입대금을 C와 국가에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시켰는지 여부
- 특검에 제출한 매입 관련 보고서를 피고인 D가 변조하였는지 여부

Ⅱ. 판결 결과 및 판시 사항

-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 판결).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는 인정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 B가 매매계약체결 후 그 매수대금을 000 대통령의 아들 C와 국가에 배분함에 있어, 사저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경호부지 가격이 내려가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사저부지 가격이 내려가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대체수단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임에도, 이미 복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굳이 이를 무시하면서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대금을 배분한 것은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궁.
- 피고인 D가 매입 관련 보고서를 변조하여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궁.

Ⅲ. 이 판결의 의의(배임 부분에 한함)

- 국가와 私人(000 대통령) 모두로부터 토지 매입임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인 피고 인 A, B로서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한 관계로 사저부지 매입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경호부지 가격이 내려가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면 사저부지 가격이 내려가는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와 000 대통령 모두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인근 부동산업자들이나 인터넷, 지인 등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감정평가결과와 전혀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저부지 가격을 낮게 평가하고 경호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위배행위임.
-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동시에 私人으로부터도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 양쪽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임.